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98 2023. 6. 23.(금) 정책복지위워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박봉순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9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봉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본 조례의 인용 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O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,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확대(안 제4조)
- O 단순오기 및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 등을 정비(안 제5조, 제7조)
- O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부서 일원화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칭하는 인용 조문 번호와 정책실명제 심의사항을 나열한 호 번호의 오기 부분을 자구수정하여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
- O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, 인용된 조례명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됨

<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 >

구 분	현 행	개정안	비고
제1조	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	V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	법령명 앞뒤 띄어쓰기
제2조제1호	결정및	결정 및	띄어쓰기
제6조제5항	위원에 대해서는	위원에게	용어 정비
제8조제4항	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	^{V୮}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^V 제9조	법령명 앞뒤 띄어쓰기

-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제1항 제8호를 "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"으로 개정하여 관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
 - ※ (현 행)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(개정안)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 - 현행 제8호는 "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"으로 되어 있는데,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희박함
 - 또한,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의3제1항4)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(도민 + 타시도 주민 신청사업)5) 및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

⁴⁾ 제63조의3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^{1.}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
^{2.}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
^{3.}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
^{4.}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
^{5.}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

^{6.}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
⁵⁾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,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·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

-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, 현 조례 제1항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열거하여 대상사업을 한정해 타시도 주민 신청사업 등이 미포함됨
- 따라서, 현행 제8호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"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"으로 개정하여 타시도 주민 신청사업 등을 포함한 그 밖의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O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오기된 호 번호를 순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
 - ※ (현행) 2. 그 밖에 → (개정안) 3. 그 밖에
- O 안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지칭하는 조문 번호를 올바르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
 - ※ (현행) 제5조제1항에 → (개정안) 제4조제1항에
-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총괄부서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
 - 현행 조례는 총괄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후,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는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, 도민 열람 시 불편함이 우려됨
 - 따라서, 홈페이지 공개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O 안 제9조에서는 인용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 - ※ (현행)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→ (개정안)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조문 오류사항 및 오기된 호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이는 조례의 적용과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
-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형식상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
- 또한,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 및 홈페이지 공개 일원화는 도민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어 법적 으로 문제가 없으며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 으로도 타당함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조례는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을 "조례는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결정및"을 "결정 및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
제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.

제6조제5항 중 "위원에 대해서"를 "위원에게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제5조제1항"을 "제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, 변동사항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"를 "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"로, "제출하고"를 "제출하고, 총괄부서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해당되지만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"를 "해당되지만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"를 하다.

제9조제3항 중 "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「행정 효</u>	제1조(목적) <u>조례는 「행정 효</u>
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	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-
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실명제	
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	
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	
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정책실명제"란 정책의 투명	1
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	
충청북도(이하"도"라 한다)에	
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	
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<u>결</u>	<u>결</u>
정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	<u>정 및</u>
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	
•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	제4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
및 범위)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	및 범위) ①
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	
다.	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	8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
식명 과리가 필요하다고 결정	사형

한 사업

② (생략)

성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2. (생략)
-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영) ① ~ ④ (생 략)

⑤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 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사업의 선정) ① 담당부서의 장 은 소관 사업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내역서(이하 "내 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 제5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 성 및 기능) ① -----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6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 제6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 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----- 위원에게-----⑥ (현행과 같음) 제7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7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) ① ---------- 제4조제1항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- 제8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 저 업의 관리 및 공개) ① (생 략)
 - ② 담당부서의 장은 <u>선정된 정</u> 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, 변동사항 및 추진실 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 게 <u>제출하고</u> 도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(생략)
 -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,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평가 등) ①・② (생 략)

③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 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게 <u>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</u>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다.

세8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
사업의 관리 및 공개) ① (현행
과 같음)
② <u>제1항의 내</u>
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-
제출하고, 총괄부서의 장은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4
해당되지만 「공공기관의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
세9조(평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

관계 법령 발췌

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- 제63조(정책의 실명 관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, 직급 또는 직위, 성명과 그 의견
 - 2.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, 보고서, 회의·공청회·세미 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·공청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, 참석자, 발언내용, 결정사항, 표결내용 등을 처리 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 : 담당자 ·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
- 제63조의2(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 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- 1.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
 - 2.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
 - 3. 자체 평가 및 교육
 - 4.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63조의3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

- 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- 2.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- 3.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- 4.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- 5.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 한 사업
- 6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3조의4(정책실명제 평가)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- 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-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O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O 사 유

- 본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잘못 인용된 조 문번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